



<u>자활기금 운용</u>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3개소, 110명							
사업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금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	행계획	□3/4분기 □4/4분기 ■연중							
	해당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제1항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법		김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단, 제8호의 경우는 제외)							
근		2. 자활근로시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거		3.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자	원 또는 자활지	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구분	2022년		2022년 최종예산			
	최종예산액 (A)	최 종 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대비 증감 (B-A)	비고
계	0	504,230	0	504,230	504,230	
국비					0	
도비					0	
시비	0	504,230	0	504,230	504,23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수입 계	504,230			
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 공공예금 이자수입 : 4,230,000원 =	4,23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 일반회계 전입금 : 500,000,000원 =	500,000			
-1 ≿		504,230				
지출	602-01 일반예치금	· 자활기금 예치금 : 504,230,000원 =	504,23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O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적립 의무사항인 자활기금 조례 제정에 따른 기금 확보
- O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립자금 및 자활기업 지원, 자활지원계획 추진 등
- O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비용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2. : 「김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 2023. 9. : 자활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2023. 10. : '24년도 자활기금 예산 편성

- 2024. 1. : 자활기금사업 지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